

시보는 광양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51호(호외) 2021. 12. 27.(월)

고 시

광양시 고시 제2021-506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협의 고시 1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1-2426호 공시송달 공고 2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▶ 발행 : 광양시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797-2323, 행정2713)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(기간연장) 협의 고시

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(기간연장) 협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24일

광 양 시



□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(기간연장) 협의내역

협의번호 (연월일)	목 적	장 소	변경사항		피 협의자	
			당 초	변 경	주소	성명
2021-1 (2021.12.24)	진월 ~ 광영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가교 및 수질오염 방지막 설치	광양시진월면 광영동(지방도 861호선 구간) 공유수면 일원	면적: 22,172㎡ 기간: 2013. 10. 22. ~ 2021. 12. 20.	면적: 22,172㎡ 기간: 2013. 10. 22. ~ 2023. 12. 20.	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	전라남도지사 (도로교통 과장)

광양시 공고 제2021 - 2426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건축주에게 「건축법」제11조 및 제86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(신고)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의견서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1년 12월 22일

광 양 시 장

1. 공고내용 : 건축허가(신고)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① 2. 공고기간 : 2021. 12. 23. ~ 2022. 1. 5.(14일간)

② 3. 공고장소 :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

4. 관련법규 : 「건축법」제11조제7항 및 제86조

5. 공시송달 대상

건축주	건축위치	관련내용	처분내용	반송사유
김영배	전라남도 봉강면 부 저리 945-6번지 (2블럭 7로트)	건축법 제11조제7항(건축허가) 및 제86조(청문)	청문을 통한 건축허가(신고) 취소	폐문부재 등

6. 유의사항

- 상기 사항에 대하여 「건축법」제11조(건축허가) 및 제86조(청문)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의견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허가과(☎061-797-287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